

1997년 9월
제68회 임시회

검 토 보 고 서

기획총무위원회
(전문위원 박종근)

순 서

1. 광주광역시서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----- 2

2. 상무1.2지구및주변비택지개발지역(유촌동)행정구역
(법정동경계)변경계획 의견요구안 ----- 4

3. 상무4지구 행정구역(법정동경계)변경계획의견요구안
----- 6

광주광역시서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

- ▶ 본 조례안은 1997년 8월 22일 시구정정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8월 26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음.

■ 제안사유

- 행정의 환경변화와 근거법령의 개폐등으로 일제정비의 필요성 대두
- 위임의 기준 및 절차를 명확히 하여 보건소장 또는 동장에게 무분별한 사무 위임 방지

■ 주 요 골 자

- (별표1)중 “사업소장에게 위임하는 사항”을 “보건소장에게 위임하는 사항”으로 하고
 - 가정복지과 위임사무에 “모자보건·가족계획사업의 기본계획 수립 및 시책의 종합조정”신설
 - 소관부서란의 “환경보호과”를 “위생과”로 하고, 약국·의료기관·안경업소·국민건강증진사업에 관한 권한 및 지역보건법시행에 관련사무 등을 신설
- (별표2)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중
 - 문화홍보실 소관 “동네체육시설의 관리 및 보수”, 가정복지과 소관 “노령수당 지급”, 지역경제과 소관 “농지취득 자격증명”등을 신설

■ 관 련 근 거

- 지방자치법 제95조
-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제3조 및 제8조

■ 검토 의견 (전문위원 박종근)

- 광주광역시서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95조 사무의 위임등 근거에 따라 구청장이 관장하는 사무중 행정환경의 여건변화와 근거법령의 개폐에 맞추어 주민편익 사무를 현실적 측면에서 법제화하기 위한 조례개정안으로
 - 보건수장에게 신규위임하는 사항은
 - 모자보건·가족계획사업의 기본계획수립 및 시책의 종합조정과 약국,의료기관,안경업 개설등록, 국민건강증진사업에 관한 권한 및 지역보건법 시행에 따른 관련사무를 신설 위임하며,
 - 일선 동장에게 신규위임하는 사무는
 - 동네체육시설의 관리 및 보수, 노령수당 지급, 농지취득자격증명등을 신설한다는 내용이며,
- 이상과 같은 위임사무는 일상적인 주민편익 차원에서는 바람직할수 있으나 허가, 인가, 등록에 따른 사무와 과태료 부과징수, 관리인 지정, 농지의 취득자격증명에 따른 이권개입등이 우려되므로 사무처리 일반적인 기준에 따라 감독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.